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도선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해양수산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 시험의 실시업무 위탁 근거를 담은 도선법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내 항만의 경쟁력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를 위해 우수한 도선사가 충원될 수 있도록 도선사 선발제도를 개선하며, 도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선사 면허등급 별 도선 대상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선사 면허등급별 도선 대상 선박범위 조정(안 제1조의2제1항)

면허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의 범위를 조정하고, 예외적으로 안전도선을 위해 지방도선운영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

나. 시험합격자 선발 범위 조정(안 제7조)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필기 및 면접시험 합격자 범위를 각각 150%에서 110%로, 130%에서 100%로 조정

다. 시험실시 업무 전문기관 위탁근거 마련(안 제19조제2항제3호 신설)

도선수습생 전형시험 및 도선사시험의 실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라. 시험 과목 및 배점의 조정(안 제7조제3항 관련 별표1)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 과목에 ‘해상교통관리’를 신설하고 ‘운용술 및

항로 표지' 과목 명칭을 '운용'으로 변경하며, 과목 별 출제 범위를 구체화하고 과목 신설에 따른 배점 조정

마. 승무경력 가산점 조정(안 제7조제4항 관련 별표 2)

대형선박 승선 경력이 있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기존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조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도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선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도선구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도선 대상 선박의 종류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도선구의 지방도선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다.

제1조의2제1항제1호 중 “도선사: 모든 선박”을 “도선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1급 도선사 경력 1년이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 1년이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10만톤 이하 선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6만톤 이하 선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4만톤 이하 선박으로 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하며,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 중 “관하여는”을 “관한 사항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아니한”을 각각 “않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반환하여야”를 “반환해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150퍼센트”를 “110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130퍼센트”를 “100퍼센트”로 한다.

제9조 중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선(互選)하는”을 “선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호선하는”을 “선출하는”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고하여야”를 “공고해야”로 한다.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시험의 실시

별표 1 제1의 배점비율란 중 “35”를 “30”으로 하고,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운용(선박조종 이론, 항해장비 및 항행 보조장치, 추진 및 조타시스템, 선체운동 및 선박 상호작용, 예선 사용 및 성능의 제한, 조위 및 정보 시스템, 지문 항해(항로표지 포함), 선박 복원성, 해양기상, 비상조치 및 손상제어, 수색 및 구조(해상통신 포함)	30
3. 해상교통관리(선박교통관제, 지능형해상교통서비스,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사정보의 이용과 통신)	15
4. 영어(IMO표준해사통신영어, 해사영어, 일반영어)	25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험과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총톤수 10만톤 규모 이상 선박 승선 경력 가산점은 2025년 3월 1일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별표2]

승무경력 가산점(제7조제4항 관련)

승무경력	가산점(필기시험의 총점을 100점으로 할 경우)
1. 6년 이상 7년 미만	1점
2. 7년 이상 8년 미만	2점
3. 8년 이상 9년 미만	3점
4. 9년 이상 10년 미만	4점
5. 10년 이상 11년 미만	5점

※ 총톤수 10만톤 규모 이상인 선박에 선장으로서 2년 이상 승선한 경우에는 2점의 승무 경력 가산점을 추가로 부여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 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서 신설>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① -- ----- ----- ----- ----- -----다만, 도선구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규정보다 도선 대상 선박의 종류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도선구의 지방도선운영협의회에서 의결하여 정할 수 있다.
1. 1급 도선사: 모든 선박 <신설> <신설>	1. -- 도선사 가. 1급 도선사 경력 1년이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나. 1급 도선사 경력 1년이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10만톤 이하 선박으로 한다.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총톤수 3만	2. ----- -----다만, 위험화물운반

톤 이상 7만톤 이하인 「해사
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
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제외
한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
하인 선박. 다만, 총톤수 3만
톤 이상 5만톤 이하인 위험화
물운반선은 제외한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
하인 선박. 다만, 다음 각 목의
선박은 제외한다.

가. 총톤수 3만톤 이하인
「해운법」 제2조제1호의2
에 따른 여객선(같은 조 제
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총톤수 3만톤인 위험화물
운반선

② (생략)

선은 6만톤 이하 선박으로 한
다.

3. -----
----- . 다만, 위험화물운반
선은 4만톤 이하 선박으로 한
다.

4. -----
----- . 다만, 위험화물운반
선은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하며, 「해운법」 제2조제1호
의2에 따른 여객선(같은 조 제
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
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
다)은 제외한다.

<삭 제>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조(승무경력)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무경력의 계산과 그 증
명에 관하여는 「선박직원법 시
행령」 제7조와 제9조를 준용한
다.

제3조(보수교육) 법 제6조의2제6
항에서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
여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
다.

1. 도선사면허의 갱신을 신청하
기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도
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
람

2. 3. (생략)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선사 수
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
립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생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제2조(승무경력) -----

--- 관한 사항은 -----

--.

제3조(보수교육) -----

----- 않은 -----

--.

1. -----

----- 않은 -----
--

2. 3. (현행과 같음)

제4조(도선사의 수급계획) ① (현
행과 같음)

② -----
----- 수
립해야 -----.

제5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신문
에 공고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①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응시원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선수
습생 전형시험에 응시하려는 사
람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른 승
무경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응시수수
료를 낸 사람이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
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 ③ (생 략)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
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
은 사람의 점수에 별표 2에 따

-- 공고해야 ----.

1. ~ 5. (현행과 같음)

제6조(응시원서의 제출) ① ----

----- 제
출해야 ----. -----

----- 첨부
해야 ----.

② -----

----- 반환
해야 ----.

제7조(도선수습생 전형시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른 해당 응시자의 승무경력 가
산점을 합산하여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
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50퍼센
트의 범위에 드는 사람을 필기
시험합격자로 결정한다.

⑤ 면접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신체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및 전 과
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받
은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순서대로 제5조제2항에 따라 공
고한 선발예정인원의 130퍼센
트의 범위에서 도선 실무수습자
의 수를 고려하여 면접시험 합
격자를 결정한다.

⑦·⑧ (생 략)

제9조(합격자 공고 등) 해양수산
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한 후에는
그 합격자를 공고하고, 합격자
에게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

----- 110퍼센트

-----.

⑤ -----

----- 제출해야 -----.

⑥ -----

----- 100퍼센트

-----.

⑦·⑧ (현행과 같음)

제9조(합격자 공고 등) -----

----- 발급해야
-----.

제18조의2(도선운영협의회의 구

성) ① (생 략)

② 중앙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 4. (생 략)

③ 지방협의회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홀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는 같아야 하며, 제4호의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

1. ~ 4. (생 략)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

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선출하는 -----

--.

1. ~ 4. (현행과 같음)

③ -----
선출하는 -----

-----.

1. ~ 4. (현행과 같음)

제19조(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도선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략)

<신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법인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에 따른 도선수습
생 전형 시험과 도선사시험
의 실시

③ -----

----- 공고해야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연 락 처	(044) 200 - 5772